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2022년 01월 01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15%	250,841	223,020	202,620	186,735	160,275	89,640
감경40% -9%	150,504	133,812	121,572	112,041	96,165	53,784
감경60% -6%	100,336	89,208	81,048	74,694	64,110	35,856

방문요양								
구분(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장기요양수가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본인부담15%	2,315	3,357	4,526	5,759	6,716	7,560	8,426	9,293

방문목욕			
구분(형태)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차량 미이용
장기요양수가	78,580	70,850	44,240
본인부담15%	11,787	10,628	6,636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수지실버재가센터